

영국의 민간경비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기*·김학경**

〈요 약〉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 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총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제1저자)(법학박사)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경찰학박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 영국 민간경비산업위원회, 의무적 자격증제도, 인증계약자제도, 민간경비 자격증

| |
|------------|
| 목 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들어가며 II. 영국 민간경비산업위원회 및 의무적 자격증제도 III. 영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 및 인증계약자 제도 IV. 영국의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V. 결론 및 제언 |
|---|

I. 들어가며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각종 치안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찰력에만 의존한 치안서비스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족한 치안서비스를 보완해주고 나아가 고객의 실질적 요구에 맞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민간경비 분야의 발전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Button, 2008).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의 민간경비업체는 3,474개, 경비원은 142,363명에 이르는 등 한국에서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경찰청, 2011).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안전욕구 또한 증대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경비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 부족, 낮은 보수로 인한 경비원의 높은 이직률과 자질문제 등 민간경비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이 민간경비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담당경찰관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결여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이상철 외, 2006). 최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향과 관련, 많은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비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대

안들 중 특히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통일된 전문 자격증 및 인증제도”와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라고 할 수 있다(<표 1>참조). 그러나 어떠한 식으로 자격증 및 전담기구제도를 도입하고 설치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과 롤 모델을 찾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비교법적 연구이다(이창무, 2007).

반면에 민간경비의 전문화·표준화가 이루어진 영국의 경우, 공공과 민간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진지 오래이며 민영화를 통해 보안이나 치안서비스가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 Security Industry Authority)라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을 규제하는 동시에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은, 바로 민간경비산업의 의무적 자격증 부여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경비업자를 평가하는 자발적인 인증계약자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다(Button, 2007). <표 1>에서 보듯이 노호래(2007)의 경우, 영국 민간경비산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무적 자격증 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 또한 소개하고 있으나, 다만 동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의무적 자격증 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인증계약자제도(Approved Contractor Scheme)”의 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민간경비업 개선대책에 대한 선행연구

| 연구자(연도) | 특징 | 개선대책 |
|------------|--|---|
| 안황권 (2006) | 1. 자격증 제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 사례 소개 2. 경호경비관련 민간자격증 소개 | 1. (사)한국경비협회가 중심이 된 자격증 관리 2. 경비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3. 자격증 종류의 다양화 전문화 4. 직무분석 후 자격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결정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연계 |
| 권상로 (2006) | 1. 민간경비 이론적 배경제시 2. 한국의 민간경비업 시장의 특징 분석 | 1.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체제 구축 2. 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 및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도입 3. 사이버범죄를 위한 기계경비의 전문화 |

| | | |
|-----------------|---|--|
| 이상철 외 (2006) | 1. 행정규제 및 감독 실효성 확보 초점 2. 실효성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제시 | 1. 허가요건의 강화 및 실질심사 2. 민간경비 감독기관의 독립적 설립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의 강화 4. 전문자격증제도 도입 |
| 노호래 (2007) | 1. 자격증 인증계약제도 포함한 영국 민간경비산업 종합적 소개 2. 한국의 민간경비현황과의 폭넓은 비교 | 1. 신입교육이수증을 자격증 제도로 대체 2. 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과 교육내용의 차별화 3. 민간경비 인증제도 도입 4. 경비원의 과거경력 철저 조사 5. 신체조건외의 완화 & 자율적 규제 |
| 최정택 (2009) | 1. 민간경비 선행연구 분석 2. 자격검정과 관련한 영국과 프랑스 사례 간략히 소개 | 1. 자격검증제도의 통일 2. 검정 및 교육시스템의 통일 |
| 석청호 (2010) | 1.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치안 실태분석 2. 협력치안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역할강조 | 1. 교육의 전문화 및 인증을 통한 민간경비업종의 전문화 2. 이미지 개선 및 경찰과의 정기적 모임 추진 3. 경찰과의 협력모형 개발(정보공유 및 상호교육 파견 등) |
| 박동균 외 (2011) | 1. 민간경비 현황 분석 2.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 제시 | 1. 허가기준에 대한 법개선 필요 2. 실질적 사후감독을 위한 독립적 전담기구 설치 3.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 4. 전문자격제도도입 5. 등급제와 최저가격제 실시 6. 민간조사제도 도입 |
| 정 응 (2011) | 1. 협력치안 제도화 모델제시 2. 법규, 조직정비, 세부운용절차에서 각각의 민간경비 역할 제고방안 제시 | 1. 경비업의 업무범위 확대와 지위에 대한 법규정 마련 2.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전담부서 신설 3.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실질적 교류확대 |

II. 영국 민간경비산업위원회 및 의무적 자격증 제도

1. 민간경비산업위원회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민간경비산업을 규제하는 관청은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 Security Industry Authority)인데 영국의 민간경비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에 근거해 2003년 설립된 독립기관으로서 제반 사항에 대해 영국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Home Office)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Button, 2007). 따라서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업무수행은 내무

부장관의 일반적 지휘에 따른 의무가 있다(민간경비업법 2조).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민간경비산업도 규제하고 있다.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민간경비산업의 의무적 자격증 부여(Compulsory Licensing)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경비업자를 평가하는 자발적인 인증계약자제도(ACS: Approved Contractor Scheme)를 관리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민간경비 산업에서의 범죄감소, 자격기준 향상, 민간경비업법에 대한 심사 등이 있다.

2. 의무적 자격증 종류 및 요건

민간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가 부여하는 의무적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관련 근거는 영국민간경비업법 Section 3과 Schedule 2에 규정되어 있다. 민간경비업법 제 3조 (2) 이하를 보면, 동 법에 규정된 경비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업체의 이사 또는 파트너 등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약식 기소일 경우 6개월 이내의 징역 또는 £5000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형사법원에서 기소될 경우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제한이 없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a)¹⁾. 자격증의 종류는, 유인경비(Manned Guarding)에 해당하는 ① 현금 및 귀중품 호송을 담당하는 ‘현금호송’(Cash & Valuables in Transit), ② 개인 또는 다수에 대한 ‘신변경호’(Close Protection), ③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일정 구역 내에서 접근 및 출입을 허가하는 ‘출입감시?’(Door Supervisors), ④ 건물 등의 시정장치를 관리하는 ‘열쇠관리’(Key Holding), ⑤ 일정 지역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과 신분확인행위와 관련된 ‘공공감시’(Public Space Surveillance(CCTV)), ⑥ 일반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심 형사재판은 크게 상급법원인 형사법원(Crown Court)과 하급법원격인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으로 관할이 나누어진다. 두 법원의 사물관할은 범죄유형에 따라 나누어진다. 영국에서는 범죄유형을 치안판사법원 전속관할로서 배심(Jury) 없이 재판이 가능한 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s), 중대범죄로서 재판장(Judge)과 배심원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해야 하는 정식기소범죄(indictable-only offences), 피의자의 선택과 치안판사의 허가로 치안판사법원 또는 형사법원 양쪽에서 모두 재판이 가능한 선택가능범죄(Triable-either way) 세 가지 범죄유형에 따라 사물관할이 결정된다.

2) 영국에서는 규모가 큰 나이트클럽이나 선술집(Pub)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수의 출입감시 현장요원(Front Line)의 확보를 중대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출입감시 현장요원들은 Door Supervisor 또는 Door Bouncer라고 불린다.

경비원에 해당하는 ‘일반경비’(Security Guarding), ⑦ 차량의 이동 및 도난방지장치 탈·부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견인 및 도난 방지’ 등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노호래, 2007).

민간경비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은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게, 민간 탐정(Private Investigators), 보안 컨설턴트(Security Consultants) 및 입법예고중인 재판 전조사원(Precognition Agents)에 대한 자격증 부여권한을 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증 제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의 민간경비 자격증 종류에 따른 현황은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는데 민간인이 자격증을 신청하여 소지한 수와 현재 유효한 자격증, 그리고 자격증이 취소된 숫자와 신청이 거부된 숫자를 총괄적으로 보여준다. 자격증의 종류는 유효자격증 현황의 기준으로 볼 때 출입감시와 일반경비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영국의 민간경비 자격증 통계(2012년 1월 23일 현재)

| 구분 | 현금호송 | 신변경호 | 출입감시 | 열쇠관리 | 공공감시 | 일반경비 | 차량 견인·도난방지 |
|-------|--------|--------|---------|------|--------|---------|------------|
| 자격증소지 | 16,209 | 13,544 | 478,911 | 알수없음 | 65,738 | 216,800 | 7,040 |
| 유효자격증 | 10,702 | 8,568 | 211,378 | 223 | 34,576 | 104,622 | 1,272 |
| 자격증취소 | 71 | 113 | 14,941 | 6 | 640 | 8,957 | 39 |
| 신청거부 | 141 | 379 | 18,835 | 7 | 744 | 6,382 | 335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b

열쇠관리(열쇠관리는 사무관리직 자격증만 존재)를 제외한 6개의 자격증은 다시 현장요원(Front Line) 자격증과 사무관리직(Non-Front Line) 자격증으로 구분된다. 현장요원(Front Line)자격증은 문자 그대로 현장에서 지정된 경비임무 및 활동을 담당하는 경비원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며, 크게 18세 이상의 연령, 신분 및 전과조회, 필수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며, 경비업무에 종사할 때는 항상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로 된 현장요원 자격증을 패용해야한다(<그림 1> 참조).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b, 4면

〈그림 1〉 민간경비원 현장요원(Front Line) 자격증 견본

반면 사무관리직(Non-front Line) 자격증은 지정된 경비업무의 지도·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리자(Manager)·감독자(Supervisor) 등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서, 18세 이상, 신분 및 전과조회만 요구되고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인가한 교육훈련요건을 채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격증은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문서 형식으로 발급된다. 사무관리직 자격증의 경우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리·감독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경비업무관리를 하여도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현금호송회사의 관리자로서 해당 분야의 비현장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일반경비업무의 관리 감독을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함이 없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장요원 자격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격증 없이 다른 분야의 사무관리직(Non-front Line)까지 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장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의 자격증 없이 사무관리직 업무를 행할 수 있고, 또한 특정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 자격증을 사용하여 다른 업무도 행할 수 있도록 영국의 민간경비자격증은 서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통합(License integration)되어 있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a).

특이한 점은, 모든 자격증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과 자격증의 구체적 정보를 입력하여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 또한 자격증번호 또는 이름 및 기타 인적사항으로 경비원의 자격증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경비회사가 후술할 인증계약(ACS)을 받았는지 여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인경비업(Manned

Guarding) 분야 중,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열쇠관리 및 차량 견인 및 도난방지 분야를 제외하고, 출입감독자·일반경비·현금과 귀중품 운송·공공지역 CCTV 감시·신변경호 총 5개 업종에 대한 자격증의 요건 중 교육훈련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Ⅲ. 영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 및 인증계약자 제도

1. 자격증별 교육훈련요건

1) 교육훈련요건 일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금호송, 신변경호, 출입감시, 공공감시, 일반경비업무에 있어서 현장요원(Front Line)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규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영국은 2010년 민간경비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교육훈련에 관한 요건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공통모듈(Common Module), 스페셜리스트 모듈(Specialist Module), 갈등관리모듈(Conflict Management Module), 물리적 간섭기술 모듈(Physical Intervention Skills Module)로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경비영업 자격증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모듈을 별도 지정하여 각 자격증간 교육훈련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추가 자격증 취득 시 필요 모듈의 교육훈련만 이수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a). 2010년부터 새로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아래 <표 3>에 기재된 모듈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컨대, 현금호송 현장요원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공통모듈과 현금호송 스페셜리스트 모듈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신변경호 현장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공통모듈은 수강할 필요 없이 신변호보 스페셜리스트 모듈과 갈등관리모듈만 수강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출입감시 현장요원 자격증은 공통모듈, 출입감시 스페셜리스트 모듈, 갈등관리모듈, 물리적 간섭기술 모듈을 다 수강해야 하며, 단 출입감시 현장요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공공감시 현장요원 자격증을 획득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경우 공공감시 스페셜리스트 모듈만 수강하면 된다.

〈표 3〉 자격증 종류별 필요한 교육모듈

| 자격증 | 공통 모듈 (Common Module) | 스페셜리스트 모듈 (Specialist Module) | 갈등관리모듈 (Conflict Management Module) | 물리적 간섭기술 모듈 (Physical Intervention Skills Module) |
|------|--------------------------|----------------------------------|--|--|
| 현금호송 | ○ | Cash & Valuables in Transit | x | x |
| 신변경호 | x | Close Protection | ○ | x |
| 출입감시 | ○ | Door Supervision | ○ | ○ |
| 일반경비 | ○ | Security | ○ | x |
| 공공감시 | ○ | Public Space Surveillance CCTV | x | x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a, 23면

2) 구체적 교육과목

(1) 공통모듈

공통모듈(Common Module)에 대한 권장교육시간은 총 10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은 5시간), ① 민간경비관련 법이해(Awareness of the Law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② 민간경비원의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for the Private Security Operative), ③ 화재안전의 이해(Fire Safety Awareness), ④ 비상대비절차(Emergency Procedures), ⑤ 민간경비산업(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⑥ 의사소통기술 및 고객관리(Communication Skills and Customer Care), 총 6가지 과목(Ses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스페셜리스트 모듈

<표 4>에 나와 있듯이, 각 자격증은 각기 다른 스페셜리스트 모듈(Specialist Module)을 수강해야만 한다. 첫 번째, 현금호송 스페셜리스트 모듈(Cash & Valuables in Transit)에 대한 권장교육시간은 총 16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동일), ① 현금호송 - 산업소개(Cash Transportation - Industry Induction), ② 현금 및 귀중품 호송산업 운용(Cash and Valuables - Transportation Industry Operations), 2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신변경호 스페셜리스트 모듈(Close Protection)의 시간은 총 138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 138시간으로 동일), ① 신변경호원의 임무와 책임(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lose Protection Operative), ② 협박·위험의 분석(Threat and

Risk Assessment), ③ 감시의 이해(Surveillance Awareness), ④ 운영계획(Operational Planning), ⑤ 법과 입법(Law and Legislation), ⑥ 대인기술(Interpersonal Skills), ⑦ 신변경호의 팀워크 및 브리핑, ⑧ 행위정찰(Conduct Reconnaissance), ⑨ 근접경호훈련(Close Protection Foot Drills), ⑩ 경로선택(Route Selection), ⑪ 신변경호 경로관리(Close Protection Journey Management), ⑫ 수색절차(Search Procedures), ⑬ 사고관리(Incident management), ⑭ 행사경비(Venue Security), 1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출입감시 스페셜리스트 모듈(Door Supervision)의 시간은 총 10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 10시간으로 동일), 그 과목은 ① 행동기준(Behavioural Standards), ② 민·형사법(Civil and Criminal Law), ③ 화재안전 이해(Fire Safety Awareness), ④ 체포(Arrest), ⑤ 마약의 이해(Drugs Awareness), ⑥ 사건기록과 범죄보존(Recording Incidents and Crime Preservation), ⑦ 자격증 관련 법(Licensing Law), ⑧ 비상대비 절차(Emergency Procedures), 8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일반경비 스페셜리스트 모듈(Security)의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 8시간으로 동일), 그 과목은 ① 경비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Introduction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ecurity Officers), ② 순찰(Patrolling), ③ 출입의 통제(Access and Egress Control), ④ 수색(Searching), ⑤ 보안환경 내에서의 기술과 시스템(Technology and System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⑥ 경비원과 법(The Security Officer and The Law), ⑦ 통신, 보고, 기록관리(Communicating, Reporting and Record Keeping), 총 7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감시 스페셜리스트 모듈(Public Space Surveillance: CCTV)은 총 22시간(필수 교육시간 22시간으로 동일)이며, ① CCTV 운영자와 직원의 책임과 임무(Introduction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CTV Operator and other CCTV Staff), ② 실무규칙, 운영절차와 가이드라인(Codes of Practice, Operational Procedures and Guidelines), ③ CCTV 장비와 운용(CCTV Equipment and its Operation), ④ 지휘실통신과 접근통제(Control Room Communications and Access Control), ⑤ 법률(Legislation), ⑥ 사고 취급(Dealing with Incidents), ⑦ CCTV 감시 및 기술(CCTV Surveillance Techniques), ⑧ CCTV 지휘실에서의 비상대비 절차(Emergency Procedures in the CCTV Control Room), ⑨ CCTV 작업환경에서의 보건과 안전(Health and Safety at Work in the CCTV Environment), 총 9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갈등관리 모듈

갈등관리 모듈(Conflict Management Module)에 대한 권장교육시간은 총 8시간(필수 교육시간은 7.5시간)이며, ① 갈등회피와 개인적 위험감소(Avoiding Conflict and Reducing Personal Risk), ② 갈등분산(Defusing Conflict), ③ 갈등해결과 학습(Resolving and Learning from Conflict), ④ 경비 및 신변경호를 위한 대화기술과 갈등관리의 적용(Application of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lict Management for Door Supervisors),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물리적 간섭기술 모듈

물리적 간섭기술 모듈(Physical Intervention Skills Module)에 대한 권장교육시간은 총 10시간 (필수 교육시간은 7.5시간)이며, ① 물리적 기술의 이해(Introduction to Physical Skills), ②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갈등이탈기술(Disengagement Skills), ③ (물리력이 수반되는) 에스코트기술 (Escorting Skills),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모듈별 교육과목

| 공통모듈 (10시간) | 갈등관리 모듈 (8시간) | 물리적 간섭기술 모듈 (10시간) | 스페셜리스트 모듈 | | | | |
|---|--|---|--|---|---|---|---|
| | | | 현금호송 (16시간) | 신변경호 (138시간) | 출입감시 (10시간) | 일반경비 (8시간) | 공공감시 (22시간) |
| - 민간경비 관련 법 이해 - 민간경비 원의 보 건과 안 전 - 화재안전 의 이해 - 비상대비 절차 - 민간경비 산업 - 의사소통 기술 및 고객관리 | - 갈등회피 와 개인 적 위험 감소 - 갈등분산 - 갈등해결 과 학습 - 경비 및 신변경호 를 위한 대화기술 과 갈등관 리의 적용 | - 물리 적 기술 의 이해 - 갈 등 이 탈기술 - 에스 코 트기술 | - 현금호송 - 산업소개 - 현금 및 귀 중품 호송 산업 운용 | - 신변경호의 임 무와 책임 - 협박·위협 의 분석 - 감시의 이해 - 운영계획 - 법과 입법 - 대인기술 - 신변경호의 팀 워크 및 브리핑 - 행위정찰 - 근접경호 스텝 연습 - 경로선택 - 신변경호 경로 관리 - 수색절차 - 사고관리 - 행사경비 | - 행동기준 - 민·형사법 - 화재안전 이 해 - 체포 - 마약의 이해 - 사건기록과 범죄보존 - 자격증 관련 법 - 비상대비 절 차 | - 경비원의 임무와 책 임에 대한 이해 - 순찰 - 출입의 통제 - 수색 - 보안환경 내에서의 기술과 시스템 - 경비원과 법 - 통신, 보고, 기록관리 | - CCTV 운영자 와 직원의 책임 과 임무 - 실무규칙, 운영 절차와 가이드 라인 - CCTV 장비와 운용 - 지휘실통신과 접근통제 - 법률 - 사고 취급 - CCTV 감시 및 기술 - CCTV 지휘실 에서의 비상대 비 절차 - CCTV 작업환 경에서의 보건 과 안전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a, 2012b 재구성

2. 인증계약자제도(ACS: Approved Contractor Scheme)

1) 의의와 현황

민간경비업법에 의해,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인증계약자제도(ACS)를 심사하고 등록할 수 있는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국 민간경비업 규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인증계약자제도를 통하여 경비회사를 운영하는 업체에게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게 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고객들이 민간 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경비회사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및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점이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b). 물론 앞서 설명한 해당분야의 의무적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상 기본적으로 경비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법적규제는 없다. 그러나 민간경비업법 제 16조는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경비업법 제 14조 1항에서 인증된 경비업체의 등록과 관리를 민간경비사업위원회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경비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주소, 인증된 서비스의 종류, 인증유효기간, 인증의 조건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국민에게 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인증의 취소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계약인증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고객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경비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관리책임을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12월 31일자 현재 영국과 웨일즈 지역에서 인증된 민간경비회사는 모두 723개 업체로서 이 업체에 의해 고용된 자격증소지 민간경비원은 129,000명이다. 업체 규모 및 민간경비 분야별 인증현황은 아래 <표 5>, <표 6>과 같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c).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비회사의 규모를 볼 때 최소형 및 소형 경비업체도 인증을 받은 비율이 57퍼센트나 되고 분야별로는 출입감시나 일반경비의 인증자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인증을 받은 경비회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경비업체의 인증내용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모든 경비원은 실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은 회사는 훈련요건만 충족되면, 자격증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업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 충원 등에 있어서 비인증 회사보다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 일종의 형사처벌의 특례를 받는 것이다. 셋째, 고객들로 하여금 인증 받은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우선, 인증된 회사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증될 때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부터 ACS 홍보책자를 받아 고객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증마크를 차량, 웹사이트 등 홍보용으로 부착할 수 있다.

〈표 5〉 업체 규모에 따른 인증현황

| 업체 규모 | 인증 회사 수 | 비율 |
|-----------------|---------|-----|
| 최소형(1-10 고용) | 198 | 27% |
| 소형(11-25 고용) | 213 | 30% |
| 중형(26-250 고용) | 252 | 35% |
| 대형(250 명 이상 고용) | 60 | 8%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c

〈표 6〉 민간경비 분야별 인증회사 수

| 분야 | 인증회사 수 |
|---------|--------|
| 현금호송 | 16 |
| 신변경호 | 33 |
| 출입감시 | 202 |
| 열쇠관리 | 296 |
| 공공감시 | 124 |
| 일반경비 | 668 |
| 차량 도난장치 | 8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c

2) 인증계약을 위한 요건과 절차

우선, 모든 경비회사는 인증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단계로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제시한 자가분석표에 의해 인증자격여부를 스스로 심사하고 인터넷으로 해당 자가분석표와 증빙자료를 보낸 후, 신청서와 수수료를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 보낸다. 그 후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인증한 실사업체 리스트 중 원하는 업체와 약속을 하여 실사를 받게 된다. 이와 달리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심사를 받은 경우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별도의 실

사 없이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쳐계약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인증실사제도(Accredited Passport Schemes)라고 하며 특정경비분야별로 인증업체가 지정되어 있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a).

인증신청자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철회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기망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제공된 정보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30일 이내에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심사기관이 인증심사를 위한 방문이 해당 일에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하며 그 방문에 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계약자 인증기준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업개발모델인 ISO9001과 유럽품질재단 평가모델인,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EFQM) Excellence Model”을 참조하여 만든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평가요소는 기업운영의 관리, 운영 측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하는가, 고용인에 대한 처우 문제 등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면을 심사한다. 인증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7>과 같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표 7> 인증계약자 심사 시 고려요소

| 항 목 | 구체적 심사내용 |
|------------|---|
| 전략 |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전략 |
| 절차 |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명한 절차를 갖출 것 |
| 영업관계관리 | 고객과 서비스제공자간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둔 투명하고 견고한 영업관계 관리전략 |
| 회계관리 |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자산의 건전성 |
| 자원 |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 장비 등의 유무 |
| 인력 | 고용인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리프로그램 |
| 리더십 | 회사 운영과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리더십 보유여부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경비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 관리 여부 |
| 실적관리 |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기업 실적의 이해와 관리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b 재구성

3) 인증계약자 사후관리 및 자격증특별허가고지(LDN: License Dispensation Notice)제도

인증계약자의 지위는 최대 3년간 주어지며 인증 후 매년 인증등록신청을 해야 한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b). 또한 3년의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인증지위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인증계약자가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인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인증기준 적합도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인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인증계약자가 인증절차과정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
- 인증 받은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등 인증지위를 남용한 경우,
- 인증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발견될 때,
- 민간경비산업위원회 또는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 인증계약업체의 대표가 일정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인증계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 인증마크를 민간경비산업위원회 가이드라인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인증계약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인증계약자는 고용하려는 경비원의 자격증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기전이라도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데, 이를 자격증특별허가(License Dispensation)라고 하고 이와 관련한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자격증특별허가고지(LDN: License Dispensation Notice)라고 한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c). 이 특별허가고지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가 인증계약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허가를 하고 민간경비산업위원회 인증계약자등록시스템에 기록이 되어야 하며 민간경

비산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야에만 유효하다. 인증계약자가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부터 LDN을 받은 경우,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부터 LDN의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은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두어야 하는데 이 훈련은 자격증특별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이 훈련을 받은 전담직원이 직장을 떠나면 다른 전담직원을 두어 계속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계약자는 개인별로 LDN을 받은 경비원의 기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LDN의 유효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2개월 동안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LDN의 최대 유효기간은 10주이다. 만약 LDN상태에서 경비원으로 배치되었으나 자격증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즉시 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경비업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동이나 취약한 성년을 위해 배치되는 경비원은 LDN에 따라 자격증발급 전 현장에 배치될 수 없다. 또한 LDN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적으로 15 퍼센트 가량 된다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d).

4) 인증계약자의 점수 취득 및 대중에의 공개 시스템

영국의 인증계약제도(ACS)는 인증계약자별로 경비서비스 이행정도를 점수화하고 경비업체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해 그 점수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고객은 자신이 제공받으려는 경비업체의 품질수준을 인증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인증계약을 받은 업체도 점수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비교를 통해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일정한 인증실사제도(Accredited Passport Schemes)를 제외한 방법으로 인증계약을 취득한 모든 경비업체는 89개 개별지표에 따라 독립된 평가단으로부터 자신들의 경비업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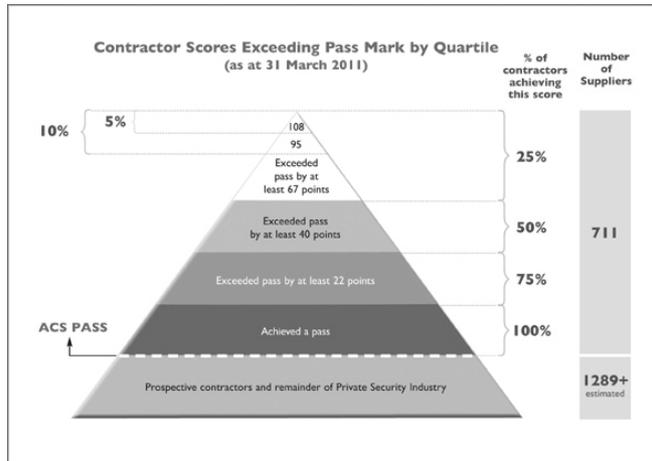
인증계약지위를 취득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점수는 0이며 필요수준 이상을 항목별로 받게 되면 +1, +2 등의 점수를 받게 되고 수준 이하를 받게 되면 -1, -2 등의 점수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경비업체가 심사결과 0점을 받았다면 인증계약제도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며 경비업체들의 바람직한 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한 업체가 최고 취득할 수 있는 점수는 159점이다. 아래 <표 8>은 인증계약 업체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 <그림 2>는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증계약업체의 점수분포현황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711개 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40점 정도를 취득하면 상위 50퍼센트에 속하고 108점 이상을 받게 되면 상위 5퍼센트에 속한다. 이와 같은 점수분포도 및 인증계약자별 점수취득현황을 대

중에게 공개하여 대중들의 선택을 폭을 넓히고 경비업체로 하여금 품질향상을 위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인증계약제도의 장점이다.

〈표 8〉 연도별 인증계약 업체의 평균 점수

| 회계년도 | 평균점수 |
|-----------|------|
| 2008-2009 | 18 |
| 2009-2010 | 30 |
| 2010-2011 | 40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d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d

〈그림 2〉 2011. 3월 현재 인증계약업체 점수분포

인증계약업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은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계약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매년 이루어지는 인증계약업체에 대한 정기 심사는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89개의 개별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리포트 를 공개한다. 부가적인 정보는 경찰 또는 같은 경비업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 되며, 불만사항, 개선사항, 의혹 등에 대한 심사와 필요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인증계약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인증계약제도의 투명성, 일관성, 책임성, 형평성 등 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아래 <표 9>는 인증계약 제재조치의 구 체적인 유형이다.

〈표 9〉 인증계약 제재유형

| 유형 | 인증계약 조치 | 구체적 예시 |
|--|---------------------------------------|--|
| 1. (ACS 심사 시 지적사항 발견) 3개 이내의 개선사항 지적 시 | 5일 영업일 이내 개선조치 제시 첫 심사 후 6주 이내 재방문 | 1. IDN과 관련 시 취소 또는 제한 2. 시간 내 개선사항 미 이행 또는 개선사항 미흡 시 인증 취소. 3. 경비업법 관련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조치, 민간경비산업위원회 조사팀(SIA Compliance and Investigation Team)의 추가 조치 가능 |
| 2. (ACS 심사 시 지적사항 발견) 4-6개 이내의 개선사항 지적 시 | 위 사항 + LDN 사용 제한 | 위 사항 및 인증계약 관리자가 진행사항 방문 및 보고 |
| 3. 6개 이상의 개선사항 | 인증 취소 인증취소계류 중 LDN 제한 | " |
| 4. ACS 심사과정 의 개선조치 발견 시 | 5일 영업일 이내 개선조치 제시 | 1. LDN과 관련 시 취소 또는 제한 2. 경비업법관련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조치, 민간경비산업위원회 조사팀의 추가 조치 가능 3. ACS 관리자의 방문보고 또는 특별 지시에 따라 차후 심사 시 이행사항 확인 가능 |
| 5. 회사 또는 이사가 범죄수사 중이거나 이사의 SIA 자격증이 정지 | 인증취소 인증취소계류 중 LDN 제한 | |
| 6. 기한 내 ACS 미심사 | 인증취소 인증취소계류 중 LDN 제한 | 1. SIA 또는 관련 심사업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
| 7. 연간 재등록 미이행 시 | 인증취소 | |
| 8. 이의제기 |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조치결정 | · 차후 심사 때 특별지시 · QA manager 방문 · 추가 ACS 심사 · LDN 제한 또는 취소 · 인증취소 |
| 9.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개선 지시 통보 시 | 해제 시까지 LDN 사용 제한 | 1. 개선사항 미이행 시 인증취소 2. 개선사항이 적합성 문제일 때 ACS 심사 3. 개선사항이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일 경우에는 차후 추가 활동을 위한 인증신청 거절 또는 6개월간 인증 정지가능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08, 4-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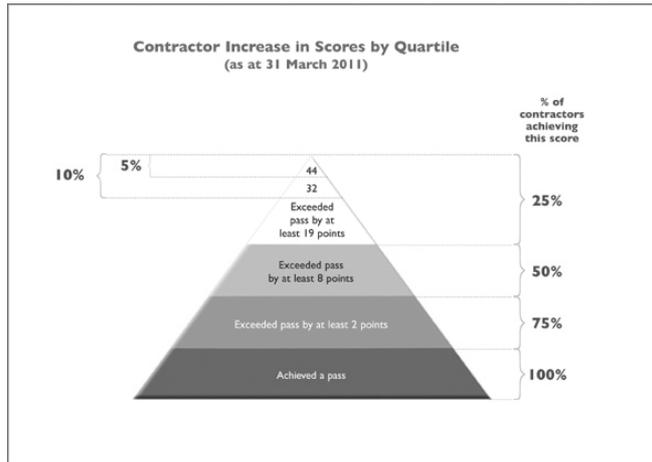
아래 <표 10>은 2010부터 2011년까지 한 회기연도 동안 인증계약 제재조치가 내려진 현황이다.

<표 10> 2010-2011 인증계약 제재조치 현황

| 유형 | 건수 |
|-------------------------------|-----|
| 독립심사(Independent Assessment) | 102 |
| 개선사항(Improvement Needs) 적발 | 19 |
| 자격증특별허가고지(LDN) 제한 또는 취소 | 9 |
| 불만사항 또는 이의제기 조사 | 16 |
| 인증취소 통보(Notice of Withdrawal) | 51 |
| 인증취소 | 48 |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e

이와 같이 인증계약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조치를 통해 인증업체들의 경비서비스는 향상된다. 아래 <그림 3>은 2011년 3월 말 작년대비 계약인증업체들의 인증점수가 향상된 분포를 나타낸다. 경비업체를 모두 합하여 한 12점의 인증점수가 향상되었다. 2010년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인증계약제도에 대한 경비회사와 고객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60개의 인증계약을 받은 회사와 6000명의 민간경비서비스 계약을 맺은 고객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c). 우선 고객의 81퍼센트가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인증한 경비회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2/3이상이 인증계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다. 또한 설문에 응한 57퍼센트의 사람들이 인증계약을 받은 경비회사의 서비스 질이 인증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보다 좋았다고 답하였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장점은 통일된 서비스기준(62%)과 불량 경비업체의 제외(54%), 경비업계에서의 좋은 관행 향상(54%)의 순이었다. 그리고 인증계약제도에서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고객들은 경비원들에게 최소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과(39%)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요건 강화(29%), 기업분석보고서를 고객과 공유하는 것(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0퍼센트가 현재의 인증계약기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대답하였고 9퍼센트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증계약 업체 중 60퍼센트가 인증계약제도로 인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답하였다.



※ 자료: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d

〈그림 3〉 2011. 3월 현재 인증점수 향상분포도

IV. 영국민간경비 자격증 및 인증계약제도 평가와 시사점

1. 전문적 국가기관 주도의 민간경비산업 규제

영국의 경우 2001년 민간경비업법을 근거로,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를 내무부 산하에 설치하여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질적 발전을 이끌고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민간경비산업의 의무적 자격증 부여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경비업자를 평가하는 자발적인 인증계약자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성,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적인 조치는 결국 민간경비산업에 있어 공적인 신뢰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특히 민간경비업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는 각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과다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양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우리의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적이고도 실질적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바로 영국과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주도의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표준화된 전문 자격증 및 교육훈련

영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경비서비스별로 자격증 및 교육훈련요건이 각각 표준화·세분화·전문화되어 있다. 민간경비가 비록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역할의 본질이 사회의 안전 및 공공의 이익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고자 전문 자격증 제도 및 교육훈련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격증의 종류는, 현금호송, 신변경호, 출입감시, 열쇠관리, 공공감시, 일반경비, 차량견인 및 도난 방지 7가지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이러한 자격증은 다시 현장요원(Front Line) 자격증과 주로 관리·감독 업무를 맡는 사무관리직(Non-Front Line) 자격증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장요원 자격증(Front Line)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로 표준화되어 있는 공통모듈, 스펙셜리스트 모듈, 갈등관리모듈, 물리적 간섭기술 모듈이라는 전문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는데(<표 4> 참조), 시민들과 항상 접촉하는 신변경호, 출입감시, 일반경비, 차량견인 및 도난관리 현장요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갈등관리모듈이라는 표준화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특색이었다. 또한 신변경호 분야의 경우에는 총 138시간이라는 장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신변경호업무의 중요성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별로 이수해야 하는 모듈의 차이는 있으며 모듈에 대한 과목과 교육시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경비업무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서로 상이함을 의미한다. 경비업별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직무분석을 전제로 각 자격증에 필요한 교육과목들이 세분화·구체화되어 있는데, 다만 사무관리직(Non-Front Line) 자격증의 경우 현장요원에게 요구되는 전문 교육훈련이 면제되고 있는데, 시민들과 일선에서 항상 접촉해야만 하는 현장요원 경비원의 전문성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현장요원 자격증이 있는 경우 전문화된 교육을 이수했다는 의미이고, 이에 교육훈련을 이수할 필요가 없는 사무관리직 자격증 분야까지 겸직할 수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 자격증을 사용하여 다른 분야 경비업까지 영위 할 수 있도록 서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상세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자격증 및 교육훈련요건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컨대 공통과정과 분야별 전문과정을 분류하여 공통과정의 경우 모든 경비원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이수케 하여 교육의 중복을 막아야 하고, 아울러 분야별 전문과정의 경우에도 직무분석을 전제로 과목을 통합하고 별도의 시험 없이 나머지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다른 경비분야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다.

3. 시장지향적인 자격증 및 인증제도 관리

해당 경비분야의 의무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모든 자격증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과 자격증의 구체적 정보를 입력하여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 및 경비업체 또한 자격증번호, 이름 및 기타 인적사항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비원의 자격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상 계약자 인증 없이도 경비업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법적 규제는 없으나, 대다수의 경비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인증계약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인증계약자 제도를 통하여,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경비업체의 인증내용과 인증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역으로 경비업체 입장에서는 인증 받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자 인증을 받은 경비회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인증 내역뿐만 아니라, 인증계약자별로 경비서비스 이행정도를 점수화 하고 경비업체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해 그 점수 또한 대중에게 공개한다. 따라서 고객은 자신이 제공받으려는 경비업체의 품질수준을 인증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인증계약을 받은 업체도 점수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호 비교를 통해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인증계약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심사를 계속 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또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경비업체를 계속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경비원은 실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은 회사는 교육훈련요건만 충족되면, 자격증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업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 충원 등에

있어서 비인증회사보다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 일종의 형사처벌의 특례를 허용하는 것이다.

셋째, 고객들로 하여금 인증 받은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우선, 인증된 회사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증이 되면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부터 ACS 홍보책자를 받아 고객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증마크를 차량, 웹사이트 등 홍보용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증계약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민간경비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자격증 및 인증계약 여부 등 각종 정보 및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잠재적 고객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경비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지향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우리의 경우도 경비업체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게 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고객들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경비회사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및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경비업체 자발적 인증제도의 도입과 온라인을 통한 인증업체의 공개 등 각종 자료 및 정보의 공개는 시장지향적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건전한 경비업 육성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은 매우 구체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관의 협력적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가장 큰 특징으로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 자격증 여부 및 인증된 경비회사의 현황과 그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민간경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둘째,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경비

서비스별로 매우 구체화된 자격증요건과 교육훈련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자격증별로 공통된 교육요건을 마련, 자격증의 통합을 통한 교차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셋째,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넷째, 자격증 제도를 현장요원 자격증과 사무관리직 자격증으로 구분함으로써, 관리·감독과 실제 현장경비업무를 구분, 관리·감독을 하는 사무관리직 자격증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면제시킴으로써 자격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경찰관의 비율은 1/382이나 민간경비원은 비율은 1/17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양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CoESS, 2011). 이런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경비업체의 전문화를 위한 일환으로 의무적 자격증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질적인 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에 런던에서 개최될 올림픽 경비를 위해서 경찰 및 군인을 포함하여 약 2만 3700여명의 경비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중 약 1만여 명이 민간 경비원으로 충원될 예정이다(AP, 2012). 올림픽이라는 국가 중요행사에 민간경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설명된 영국 민간경비 자격증 종류 및 교육요건 그리고 인증계약자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를 통한 평가와 시사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 발전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권상로 (2006).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 434-464.
- 노호래 (2007). 민간경비규제 한·영 비교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105-137.
- 박동균·이민형 (2011). 한국 민간경비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11-41.
- 안황권·공배완 외 6인 (2007). *비교사큐리티제도론*, 인천: 도서출판 진영사.
- 이상철·신상민·이민형 (2006). 민간경비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경호경비연구학회지*, 12, 245-269.
- 이창무 (2007). 각국 경찰의 집회시 관리방식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미국·영국·독일·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 13-39.
- 석청호 (2010). 협력치안체제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4, 67-90.
- 정웅 (2011). 협력치안에서 효율성 확보와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99-127.
- 최정택 (2009). 민간경비 자격검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8, 143-167.

2. 국외문헌

- Button, M. (2007). Assessing the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across Europ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4(1), 109-128.
- Button, M. (2008). *Doing Security: Critical Reflections and an Agenda for Change*, UK: Palgrave Macmillan.
- CoESS(Confederation of European Security Services) (2011). *Private Security Services in Europe. CoESS Facts & Figures*, Belgium: CoESS.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08). *Approved Contractor Scheme: Framework for Application of ACS Sanctions*, Liverpool: Security Industry Authority.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a). *Get Licensed: SLA licensing criteria*, Liverpool: Security Industry Authority.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b). *Approved Contractor Scheme: Terms & Conditions of Approval*, Liverpool: Security Industry Authority.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0c), *Security Industry Authority: ACS Review 2010*, Liverpool: Security Industry Authority.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a). *The SLA Approved Contractor Scheme: Self Assessment Workbook*, Liverpool: Security Industry Authority.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b). *How to become an Approved Contractor*, Liverpool: Security Industry Authority.

3. 기타

- 경찰청 (2011).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On-line]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none [검색일: 2011년 12월 3일].
- AP (Associated Press) (2012). London's unemployed strive to get Olympic jobs, [On-line]
http://hosted.ap.org/dynamic/stories/O/OLY_LONDON_2012_SIX_MONTHS_TO_GO?SITE=DCTMS&SECTION=HOME&TEMPLATE=DEFAULT, [Accessed: 28 January 2012].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b). ACS Accessing Bodies, [On-line]
<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acs-assessors.aspx>, [Accessed: 3 December 2011].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c). ACS Profile, [On-line]
<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acs-profile.aspx>, [Accessed: 31 December 2011].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d). Approved Contractor Scores, [On-line]
<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acs-scores.aspx>, [Accessed: 31 December 2011].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1e). ACS Quality Assurance, [On-line]
<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acs-quality-assurance.aspx>, [Accessed: 31 December 2011].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b). Licensing Statistics, [On-line]
<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licensing-stats.aspx>, [Accessed: 23 January 2012].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c). License Dispensation Notice, [On-line]
<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acs-ldn.aspx>, [Accessed: 23 January 2012].
- Security Industry Authority (2012d). SIA Accredited Passport Schemes, [On-line]
<http://www.sia.homeoffice.gov.uk/Pages/acs-passport-accredited.aspx>, [Accessed: 23 January 2012].

【Abstract】

Insights from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of the UK Private Security

Lee, Seong-Ki
Kim, Hak-Kyo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xpanded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s throughout the world, largely because the existing security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 not satisfy demands of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people in the society for better security service. Therefore, it would not be unfair to say that security services by private sectors are decided by its quality, price, and customers' needs. A refined management system, however, is essential to assess qualification of security companies and their service quality, given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security service. Despite the steady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at its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training,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not been fully updated enough to guarantee good quality.

This paper aims to gain insights to effective policy formation in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reviewing the licensing system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hereinafter the ACS) in the UK- that has on one hand systematically regulated private security industry, but on other hand has enforced public-private cooperation by laying significant stress on autonomy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UK policy for the private security is that 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 (hereinafter the SIA), an independent authority, is leading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he UK through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nd enhanced service quality. In addition, the UK is developing quality of security service with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cruitment of good quality security guards by adopting not only substantially specified regulations and standards, but the voluntary ACS system. Moreover, the SIA analyzes customers' demands for security service specializing the policy for private security through conducting a variety of surveys.

With the analysis of the UK private security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hange from a non-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an independently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authority like the SIA and adopt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CS system of the UK.

Key words : Private security, UK Security industry authority,
Compulsory licensing, Approved contractor scheme,
Private security license